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신청·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단, 세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1. 3. 3.(수) 10:00 ~ 3.12.(금) 18:00(마감)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무작위 추첨
  - 1구간 2,500명, 2구간 2,000명, 3구간 500명
    - ※ 전년도 구간별 신청 및 선정 인원, 주거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인원 배정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월 : 5월(3~4월중 이체증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2.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1981.3.4.~2002.3.3.)
  - ※ 연령 기준은 신청·접수시작일(2021.3.3.)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임차료는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됨.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 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0년 12월~'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 월/원)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선 정 기 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2,500
2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2,000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500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 1)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무보증월세 등 기타 (① 또는 ②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 ②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 할 수 있음.

#### ○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해당자만)

####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 5.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1년 4월 예정
- 발표 : 개별 문자발송 예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 ‘마이페이지’(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6. 선정자 의무사항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후 부터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2개월분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격월로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 7. 이의신청

-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
  - 서울시에서 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신청 제외 대상자로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상담 창구(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문의)에 문의 시 답변

◆ 상담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 2133 - 1337~1339)

주택정책과(☎ 02 - 2133-7701~7705)

※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